

## 제2장 상품 무역

### 제2.1조 적용범위

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.

### 제2.2조 내국민 대우

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,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

### 제2.3조 상품 분류

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와 그 개정에 합치하는 각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분류이다.

### 제2.4조 관세 철폐

1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준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.
2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각 당사국은 부속서 2-가의 자국 양허

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.

3.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, 그 관세율이 부속서 2-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.

4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양 당사국은 부속서 2-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 이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합의는 제18.6조(개정)에 따라, 부속서 2-가의 양국 양허표 수정을 통하여 채택된다.

5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후에 부속서 2-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고, 한쪽 당사국에 의한 그러한 결정은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될 수 있다.

## 제2.5조

### 상품의 일시 반입

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회원인 일시 반입 분야의 국제 협정을 적용한다.

## 제2.6조

### 수입 및 수출 제한

1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 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.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 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<sup>1</sup>

---

<sup>1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1항은 특히 재제조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에 적용된다.

2.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.

가.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,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

나.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, 또는

다.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되는,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

3. 한쪽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

가. 다른 쪽 당사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면서,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나.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,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공표한다. 그리고

다. 요청에 따라,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.

## 제2.7조

### 수입허가

어떠한 당사국도 WTO의 「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」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

거나 유지하지 않는다.<sup>2</sup>

### 제2.8조

#### 행정 수수료 및 형식

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.

### 제2.9조

#### 국영무역기업

양 당사국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, 1994년도 GATT 제17조, 그 주해 및 「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」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.

### 제2.10조

#### 관세평가

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 제1부 및 부속서 I 주해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.

### 제2.11조

#### 상품무역위원회

---

<sup>2</sup>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어떠한 조치가 WTO의 「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」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,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“수입허가”의 정의를 적용한다.

1.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.
2.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,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,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한다.